

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로서, 해당 대출받은 원리금을 상환하려는 경우로 정함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생략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: 기타 신·구조문 대비표 별첨

4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0년 7월 29일까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(참조: 퇴직연금복지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(☎ 044-202-755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●고용노동부공고제2020 - 286호

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,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『산업표준화법』 제5조(산업표준의 제정 등)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(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)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7월 9일

고용노동부장관

작업장 공기질 분야 한국산업표준(KS) KSI_NEW_20200661 등 6종 제정 예고

1. 표준번호 및 표준명

연번	구분	제정번호 임시 표준번호	표준명
1	제정	KSI_NEW_2020066 1 (KSIISO 14382)	작업장 공기-1(2-피리달)피페라진코팅 유리섬유 여과지와 자외선 및 형광검출기가 장착된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톨루엔다이소시아네이트 증기의 측정 및 분석
2	제정	KSI_NEW_2020066 2 (KSIISO 17091)	작업장 공기-수산화리튬, 수산화나트륨,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칼슘의 측정-서프्रेस이온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해당 양이온 측정법
3	제정	KSI_NEW_2020066 3 (KSIISO 17736)	작업장 공기-이중 여과지 측정장치와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공기 중 이소시아네이트의 측정 및 분석
4	제정	KSI_NEW_2020066 4 (KSIISO 20581)	작업장 공기-화학적 인자의 측정절차 수행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
5	제정	KSI_NEW_2020066 5 (KSIISO 13138)	공기 질-인체호흡기계에서 공기중 입자 침착을 위한 시료채취 규약
6	제정	KSI_NEW_2020066 6 (KSIISO 18158)	작업장 공기-용어

2. 주요 제정 사유

○ KSI_NEW_20200661(KSIISO 14382): 작업장 공기에서 공기 중 톨루엔다이소시아네이트(TDI)의 채취 및 분석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여, 이 표준에 규정된 절차로 특히 2,4- 및 2,6-TDI 증기의 단기(15분) 및 장기(4시간) 시료 채취 및 분석에 적합하게 하기 위함.

○ KSI_NEW_20200662(KSIISO 17091): 작업장 공기에서 여과지로 수산화물 입자상 물질을 채취하고 해당 양이온을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하여, 수산화 리튬(LiOH), 수산화 나트륨(NaOH), 수산화 칼륨(KOH) 및 수산화 칼슘[Ca(OH)₂]의 시간 가중 평균 질량 농도를 결정하는 방법을 규정 하기 위함.

○ KSI_NEW_20200663(KSIISO 17736): 작업장 공기에서 공기 중 이소시아네이트의 시료채취 및 분석에 대한 일반 지침을 제공하고, 유리(free) 이소시아네이트 작용기를 함유한 유기 화합물에 적합하며 단량체, 중합체 및 예비 중합체, 증기 및 에어로졸의 정량에 특이성을 갖는 것을 활용한 측정 분석을 규정하기 위함.

○ KSI_NEW_20200664(KSIISO 20581): 작업 환경 중 화학적 인자의 농도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성능 요구사항을 규정하며, 화학적 인자의 물리적 형태(가스, 증기, 공기 중 입자), 별도의 시료 채취 및 분석 방법을 사용한 측정 절차 그리고 직독식 장치와 상관없이 측정 절차의 모든 단계에 적용하기 위함.

○ KSI_NEW_20200665(KSIISO 13138): 호흡기계의 5개 특정 영역(비강의 앞쪽과 뒤쪽 영역, 기관지 영역의 섬모세포와 비 섬모 부분, 그리고 폐포(가스 교환) 영역))에서 비 휘발성, 비 흡습성, 비 섬유상 에어로졸의 침착을 평가하기 위한 이상적인 시료채취기(sampler)를 규정하기 위한 시료채취(sampling) 규약을 규정하기 위함.

○ KSI_NEW_20200666(KSIISO 18158): 화학 및 생물학적 인자에 대한 용어와 정의를 참조하여 작업장 노출 평가와 관련된 용어와 정의를 명시함으로써 일반적인 용어이거나 공기 시료 채취의 물리적, 화학적 과정, 분석 방법(2.3 참조), 또는 방법 성능에 활용하기 위함.

※ 표준내용과 상세사항은 e-나라표준인증(www.standard.go.kr)에서 확인 가능

3. 의견제출

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0일까지 다음의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(산업보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)

작업장공기질 분야 한국산업표준(KS) 제정 예고 검토의견

개정안 찬성 / 반대	검 토 의 견	
	수 정 의 견	검 토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(국민신문고 등 질의사항 및 제안으로는 접수 불가)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: (우편번호: 30117)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

업보건과

- 전자우편: jaewoo12@korea.kr
- 팩스: 044) 202-8093

4. 그 밖의 사항

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 → 정보공개 → 법령정보 → 훈령·예규·고시)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(☎ 044-202-773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●해양수산부공고제2020-1016호

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.

2020년 07월 09일

해양수산부장관

1. 법인의 명칭: 한국토니지76호 선박투자회사
2. 법인의 대표자: 문병삼
3. 본점의 소재지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(이도이동)
4. 설립 자본금: 금15,000원
5. 설립목적: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
6. 선박투자업 인가일: 2020년 6월 1일(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)

●해양수산부공고제2020-1017호

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.

2020년 07월 09일

해양수산부장관

1. 법인의 명칭: 한국토니지77호 선박투자회사
 2. 법인의 대표자: 문병삼
 3. 본점의 소재지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(이도이동)
 4. 설립 자본금: 금15,000원
 5. 설립목적: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
 6. 선박투자업 인가일: 2020년 6월 1일(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)
-